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수정안

의 안 번 호 215

2023. 7. 14. 자치행정위원장

1. 수정이유

가.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(2018)에 따르면, 조례의 일부를 나타내는 "조항호목"은 하나의 명사로 보기 때문에, 인용할 때에는 조항호목을 붙여 "제○조제○항제○호"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 조문의 용어는 되도록 외래어를 그대로 쓰기보다 시민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한글로 표기 및 표현해야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안 제7조 제2항 전단의 "제3조 2호부터 4호"를 "제3조제2호부터 제4호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의 "매뉴얼"은 "안내서"로 수정한다.
- 나. 수정한 부분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한다.

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수정안

안 제7조 제2항 전단의 "제3조 2호부터 4호"를 "제3조제2호부터 제4호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의 "매뉴얼"은 "안내서"로 수정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생략>	<생략>
제7조(상징물의 관리 등) ① 시장	제7조(상징물의 관리 등) ① 시장
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	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
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	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
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	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②제3조 2호부터 4호에 규정된	②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 규
<u>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매뉴얼</u>	정된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
등 관련 규정집을 따른다.	안내서 등 관련 규정집을 따른
	<u>다.</u>